

보도자료

보도	2024.12.12.(목) 14:00	배포	2024.12.12.(목)		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팀 장	최승록	(02-3145-8129)		
	불법사금융대응1팀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규현	(02-3145-8121)		
	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팀 장	정윤미	(02-3145-8285)		
	불법사금융대응2팀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동균	(02-3145-8526)		

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,500만원 지급하고,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규모 확대 추진

- 불법시금융, 유시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는 금감원(☎1332)에 적극 신고하세요!!

주요 내용

- □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,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,
 - 금년에도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제보자를 선정*하여 총 8,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(12.12. 포상식 진행)
 - * 최우수 1명, 우수 7명, 적극 6명, 일반 7명
- □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,
 -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므로,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(☎1332)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- □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중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,
 - 국민들의 **적극적인 제보·신고**를 바탕으로 **불법 금융행위**로 인한 **피해**가 **발생하지 않도록 최선**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.

I 개요

- □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, 유사수신,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*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*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'16.6월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제도 도입 후, '23년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6억 6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
- □ 최근 ¹⁰서민·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, ²⁰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, ³⁰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건들이 있었으며,
 - 이 중 혐의자 검거 등 **가시적인 수사결과**가 있는 **제보건**을 대상으로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.

Ⅱ 포상 행사 내용

- □ (**포상식 일시 및 장소**) '24. 12. 12.(목) 15:00, 금융감독원*
 - * (주요 참석자) 금융소비자보호처장, 불법사금융대응1.2팀장, 포상대상자 등
- □ (심사대상 및 항목) 금융감독원이 제보자(또는 피해자)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*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 (경찰 등)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,
 - * 투자계약서,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(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)를 제출
 -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 내용의 완성도, 예상 피해규모,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.
- □ (선정결과)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하였으며,
 - 최우수 1명(10백만원), 우수 7명(총 50백만원=3명 x 각 10백만원+4명 x 각 5백만원), 적극 6명(총 18백만원=2명 x 각 5백만원+4명 x 각 2백만원), 일반 7명(총 7백만원 =7명 x 각 1백만원) 등 총 21명에 8,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
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선정 결과

(단위 : 명, 만원)

그ㅂ 등급	최우수		우수		적극		일반		합계	
구분 증답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
유사수신	-	-	3	3,000	2	1,000	-	-	5	4,000
불법 금융투자업	1	1,000	3	1,500	-	-	3	300	7	2,800
불법사금융*	-	-	1	500	4	800	4	400	9	1,700
합계	1	1,000	7	5,000	6	1,800	7	700	21	8,500

^{*} 미등록 대부업, 불법 채권추심 등

Ⅲ 향후 계획

- □ 12.12.(목)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,
 -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·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·신고*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 - * 금융감독원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(☎1332)」 및 인터넷「불법금융신고센터」에서 제보·신고 가능
- □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*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,
 - * 예 : 불법 금융투자업 또는 불법사금융의 최대 포상금액 1천만원에서 2~5배 증액
 -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·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.
 - ※ (붙임 1) 주요 불법 금융행위 제보사례 (붙임 2) 불법 금융행위 피해 제보·신고 방법 등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 1 주요 불법 금융행위 제보사례

◈ 아래의 제보사례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 등을 위해 각색하였음

1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

★ 불법대부업자 A는 인터넷 대출카페 등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서민·취약계층 등 대출희망자를 유인하여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을 실행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여 대출희망자 유인

- **피해자 B**는 생계비로 쓸 **급전**이 필요하여 **인터넷 검색**을 통해 알게된 A에게 연락하여 **고금리**의 **비대면 대출*을 진행**함
 - * 20만원 대출, 38만원 상환
 - ☞ 실제 이자율 : 이자(18만원)÷대출원금(20만원)÷대출기간(7일)×365일 = **연 4,693**%
- 이 과정에서 불법대부업자 A는 피해자 B의 가족(자녀 포함), 친구, 직장동료 **전화번호**를 받아감
- 피해자 B는 몇 차례 대출을 이용하였으며, 이후 일부 연체가 발생하자 불법대부업자 A는 지속적인 전화, 문자로 피해자 B 및 가족 등에게 **폭언과 협박**을 일삼으며 **채무상환을 독촉**
- ☞ 피해자 B씨는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납부하였음에도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당하자 금감원에 신고

불법대부계약을 권유·체결

<mark>폭언 및 협박</mark>을 수반한 **불법추심**

금감원에 신고

2 신기술 유망 사업 빙자 유사수신 사기

신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업체라며 투자자 모집

- 또한, **D업체**는 **나스닥에 상장**될 것이며, 상장 후 수십 배로 주가가 올라 **원금이 보전**될 뿐만 아니라 **막대한 수익**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**투자자를 현혹**
- 원금보장 및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현혹
- 이 과정에서 E는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, 제보자 C에게 투자금 모집 시 1명당 **7%의 추천수당**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권유
- 지인 소개 시 추천수당 지급한다며 투자자 모집 권유
- ™ 제보자 C씨는 D업체가 사업의 진위여부와 무관한 서류 등을 제시하고, 나스닥 상장에 대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품어 동 업체를 검토해 본 결과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막고자 금융감독원에 제보

<mark>사업의 건전성</mark>을 **의심**하고 금감원에 제보

3 가짜 주식거래 앱을 이용한 '리딩방' 사기

- ▼ **피해자 F**는 '24.3월경 급등주를 추천해준다는 **리딩방 문자를 받고** 하단의 접속 링크를 클릭하여 **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**
- **리딩방 문자**를 통해 채팅방 입장
- 채팅방에서는 해외 금융사 G업체 대표를 사칭한 H가 주식을 추천하면서 G업체 계좌를 통해 일평균 10% 이상의 투자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고, 수익 인증글이 수차례 올라오자 F는 H를 신뢰
- 해외 금융사 사칭, 수익 조작을 통한 신뢰 형성
- H의 매니저는 G업체의 계좌 사용을 위해 주식거래 앱(가짜 MTS)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, 이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수익률이 300% 이상이라고 현혹하였으며, F는 앱을 설치해 투자금을 입금
- **가짜 MTS** 설치 유도 및 <mark>공모주 투자 권유</mark>
- 이후 큰 수익을 거둔 F가 **투자금을 인출**하려고 하자 H는 **세금,**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며 출금에 응하지 않음
-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**납입 요구**
- ☞ **피해자 F씨**는 추가 납입을 했음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자 **불법** 금투업자로 의심하고 금감원에 신고

금감원에 신고

붙임 2 불법 금융행위 피해 제보신고 방법 등

1 신고요건

- □ 유사수신·전기통신금융사기·불법 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**구체적인 혐의사실**(위반행위자, 장소, 일시, 방법 등)을 **적시** 하고 관련 **증빙자료***를 첨부하여 신고
 - * 공시자료,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
-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
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함을 유의

2 신고방법

가. 인터넷

- 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 '불법사금융신고센터' 또는 1332(→3번)를 통해 제보·신고 가능
- ① 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 유사수신,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신고·제보*
 - * [유사수신] 투자설명회 자료, 투자계약서, 녹취록, 대화내역, 자금 이체내역 등 [불법 대부업] 금전차용증서 등 대부계약서 일체, 채권자 인적사항, 녹취록 등 [불법 채권추심] 녹취록, 채권자 인적사항, 채권자 대화내역 등
 - ※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☎118, spam.kisa.or.kr)로 신고
- ② (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)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·제보*
 - * 혐의자 인적사항, 녹취록, 대화내역, 자금 이체내역 등



나. 유선신고

□ 금융감독원 공식 전화번호 1332(→3번)를 통해 제보·신고 가능